

---

# 202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수시모집 특별전형 모집요강

---

2023. 05.

2024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의결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지원서류 제출	2023.07.03.(월) ~ 07.07.(금) 09:00 ~ 17:00	입학관리팀 (입학취업지원관1층)	지원자격 심사원,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별도 제출서류(11p 참고)
지원자격 심사	2023.08.14.(월) ~ 08.18.(금) 09:00 ~ 17:00	입학관리팀	
입학지원서 접수	2023.09.11.(월) ~ 09.15.(금) 09:00 ~ 17:00	입학관리팀	평일 본교 방문접수 (입학지원서)
면접고사	2023.10.21.(토)	입학관리팀	면접고사 시간 별도 통보
실기고사	2023.10.11.(수) ~ 10.21.(토)	입학관리팀	실기고사 일정 별도 통보
합격자 발표	2023.11.14.(화) 14:00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www.cju.ac.kr
문서 등록	2023.12.18.(월) ~ 12.21.(목) 09:00 ~ 16:00	지정 등록처	
최종 등록	2024.02.07.(수) ~ 02.13.(화) 09:00 ~ 16:00	지정 등록처	

※ 입학서류 및 입학지원서 제출시 유의 사항

- 「부모 및 지원자 모두가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은 위 일정에 적용받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모집요강”을 참고
-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기간에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팀을 방문하여 제출(토·일요일에는 접수 불가)
- 서류의 지연 도착,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의 불명, 연락처 오기재,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미이행 등으로 발생하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책임임

## 2.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2024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의결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입학정원 2% 이내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비즈니스 대학	인문	경영학과	88	7이내	모집 단위별 약간명	모집 단위별 약간명
		회계학과	47	3이내		
		경제통상학과	46	3이내		
		무역학과	40	3이내		
		관광경영학과	65	5이내		
		호텔외식경영학과	38	3이내		
인문 사회 대학	인문	신문방송학과	60	5이내		
		광고홍보학과	110	10이내		
		법학과	36	3이내		
		경찰행정학과	45	3이내		
		지적학과	50	3이내		
		사회복지학과	58	5이내		
		문헌정보학과	45	3이내		
영어영문학과	38	3이내				
공과 대학	자연	응용화학과	30	3이내		
		에너지융합공학과	45	3이내		
		데이터사이언스학과	40	3이내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55	3이내		
		디지털보안학과	50	3이내		
		토목공학과	30	3이내		
		환경공학과	30	3이내		
		조경도시학과	47	3이내		
		건축학과	39	3이내		
		건축공학과	40	3이내		
		전자공학과	70	7이내		
시스템반도체공학과	50	3이내				
전기제어공학과	45	3이내				
사범 대학	인문	국어교육과	38	-	-	-
	자연	수학교육과	38	-	-	-
예술 대학	예체능	시각디자인학과	50	3이내	모집 단위별 약간명	모집 단위별 약간명
		공예디자인학과	45	3이내		
		아트앤패션디자인학과	45	3이내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50	3이내		
		산업디자인학과	45	3이내		
		만화애니메이션학과	50	3이내		
		영화영상학과	60	5이내		
		연극학과	55	5이내		
생활체육학과	55	-	-	-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입학정원 2% 이내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보건 의료 과학 대학	자연	간호학과	117	-	-	-
		치위생학과	40	-	-	-
		방사선학과	33	-	-	-
		물리치료학과	41	-	-	-
		작업치료학과	40	-	-	-
		임상병리학과	42	-	-	-
	예체능	스포츠재활학과	56	3이내	약간명	약간명
	인문	의료경영학과	45	-	-	-
	자연	제약공학과	60	5이내	약간명	약간명
		바이오의약학과	40	3이내	약간명	약간명
동물보건복지학과		40	-	-	-	
직할 학부	자연	항공운항학과	30	-	-	-
		항공기계공학과	40	3이내	약간명	약간명
	인문	항공서비스학과	65	-	-	-
	자연	무인항공기학과	40	3이내	약간명	약간명
	인문	군사학과	40	-	-	-
<b>계</b>			<b>2,637</b>	<b>52명</b>	<b>제한없음</b>	<b>제한없음</b>

- ※ 전체 입학정원의 2%의 52명 선발하되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함
- ※ 단,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입학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함
- ※ 「부모 및 지원자 모두가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은 입학정원에 제한없이 선발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모집요강을 참고

### 3. 지원자격

가.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재외국민

가) 기본 학력 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분	지원자격 대상자	최저 국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년	3년	3년	-	3년	3년	3년	3년
국외근무자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1,095일)(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부모의 국외거주 사유(예):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국외 선교활동, 국외 파견 교직원 등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나) 주요 해설

(1) 지원자격 심사 공통 안내 사항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나)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에 적용)
- (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라) 동일 학년(학기)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재학 기간의 인정 기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

- (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나)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3) 부모의 근무 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 기간

- (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나)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다)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라)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마) 국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바) 국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사) 국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국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아) 국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국외 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 일까지의 기간

\*국외파견 근무자의 배우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반 체류 및 거주 의무 여부, 기간은 자율 설정

(4) 국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가)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나)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 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국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다)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5) 국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2) 외국인

가) 기본 학력 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분	지원자격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 (복수국적자 제외)

나) 주요 해설

(1)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가)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나)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의 고등학교과정(3년 전체)을 의미함

(다)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국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보호자 등의 조건

(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국외에서 고교과정을 3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국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나.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 기본 학력 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분	지원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비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예·체능 계열은 2급이상) 나.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 자체 한국어 능력시험 (3급)에 통과한 자 다. TOEIC 650, TOEFL 530 (iBT 71), TEPS 600, IELTS 5.5 이상 소지자 라.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 정규과정 3급과정 이상 수료자 마. 본교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부설 한국어연수기관에서 3급과정 이상 수료한 자 바. 일부과정(정부초청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예체능학과 입학생, 이중언어과정)의 경우 기준 완화	가~바 중 1개 이상 충족

2) 주요 해설

가) 전 교육과정

(1)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하여야 함)

(나)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다)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2)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3)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4) 국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나) 보호자 등의 조건

(1)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자격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98조)

- (1)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2)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 (3)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 인정
  - (4)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5)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 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 4. 제출서류

##### 가. 공통 사항

- 1) 입학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류 발행기관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2)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공증기관이 공증한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3) 제출 서류상 이름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4) 제출서류 중 공인기관의 공증서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영사)관의 공증을 권장함
-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 기간, 체류 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	① 지원자격심사신청서 ②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③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영주교포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②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학생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⑥ 출입국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⑦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⑧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모, 학생)	각 1부
국외 파견 근무 재외 국민 . 기타 재외 국민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②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⑥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⑦ 여권사본(부, 모, 학생) ⑧ 재외국민등록 등본(부모, 학생) ⑨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⑩ 국외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⑪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⑫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각 1부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②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한국 국적과 취득한 외국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서) ⑤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제)적 등본) ⑥ 외국국적증명서(학생: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각 1부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b>전 교육 과정 이수 재외국민</b>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⑥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⑦ 신분증 사본	각1부
<b>전 교육 과정 이수 외국인</b>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⑥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⑧ 재정보증서류	각1부
<b>북한이탈 주민</b>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③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학력확인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각1부

## 5.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가. 평가요소 및 배점

구분	모집단위	선발 모형	사정 비율	전형요소(%)			
				면접 구술	서류 전형	실기	기타 (세부명)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정원 2%이내)	전체 모집단위 *사범대학, 보건의료과학대학 (스포츠재활학과, 제약공학과, 바이오의약학과 제외), 생활체육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군사학과 제외	일괄 합산	100	100	-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정원 제한없음)			100		100		예체능계열 제외
						100	시각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학과, 아트앤패션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북한이탈주민 (모집정원 제한없음)			100	100			영화영상학과, 연극학과

### 나. 평가 및 선발 방법

- 1) 면접고사는 언어 구사 능력, 지원 전공 이해력, 학업 수학 능력, 자기소개 및 수학 계획 평가 등 4개 평가 항목을 직접대면 구술에 의한 수학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함 (단, 예체능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간단한 실기 테스트 병행)
- 2) 입학성적 총점의 60%(60점) 미만을 취득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3) 모집인원은 총 52명으로 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총점 순에 의하여 선발함. 단, 전 모집단위 지원자가 전체 모집인원(52명)을 넘을 경우 각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총점 순에 의해 해당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에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52명을 선발함
- 4) 모집정원에 제한 없는 정원외에 해당하는 지원자(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는 입학성적 총점이 60%(60점) 이상일 경우 전원 선발함
- 5)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 6) 정원 제한이 있는 재외국민및외국인(모집정원2%이내)을 제외한 다른 전형은 면접 및 실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음

## 6.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가. 전형료 : 70,000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외의 전형은 별도 모집요강 참조)

##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1) 지원자(수험생)는 수험기간 중 우리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반 지시에 따라야 함
- 2) 서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고,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니 신중을 기하기 바람
- 3) 전형기간 중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 주소 등 연락처를 입학원서 접수 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휴대폰 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안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변경 시 입학관리팀(043-229-8033, 8034)으로 즉시 통보

- 4) 입학전형 성적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5)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 또는 초과한 경우에도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6)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선발 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 7) 신입생은 입학년도 1학기 중에는 휴학할 수 없음[질병 휴학 및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학(입영통지서가 있는 경우) 제외]
- 8) 에너지융합공학과(편제정원 45명) 1학년은 청주대학교 본교에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2학년 교육과정 부터는 새롭게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음성) 청주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에서 에너지 특성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함
- 9) 바이오의약학과 1학년은 본교에서 교양수업 중심으로, 2학년부터는 오송바이오캠퍼스(KTX오송역, 식약처 등 정부기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공공기관 및 다양한 제약 바이오기업과 인접)에서 첨단 바이오 전공수업을 수강하게 되며, 학기 중 본교와 오송 바이오캠퍼스 간 하루 왕복 3회 셔틀버스를 운행함

나.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1) 지원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 원본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회신용 봉투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이때 회신용 봉투의 겉봉에 지원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부착하여야 함
- 3) 제출서류의 지연도착,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의 불명, 연락처 오기재,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책임임

다. 실기 및 면접고사에 관한 사항

- 1) 신분증은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신분증 중에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만 인정
- 2) 신분증은 수험기간 중 항상 휴대하여 실기 및 면접고사 시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신분증 미지참 시 고사 응시 불가)
- 3) 실기 및 면접고사 당일에는 휴대폰(스마트폰), 통신기기, 녹음기 및 카메라 등을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고사 종료 이후라도 고사 중 휴대폰(스마트폰), 통신기기, 녹음기 및 카메라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4)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우리 대학교의 공지가 없는 한 면접고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되므로 모든 수험생은 고사시간에 늦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함

라. 복수지원 허용 범위

- 1)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은 최대 6회 이내에서 복수지원 가능
- 2) 지원자가 6개 전형(정원 외 전형을 포함한 수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 됨
- 3) 동일한 전형에 2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없음
- 4)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우리 대학교는 물론 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마. 이중등록 금지 원칙

- 1)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완료 상태)해야 함
- 2)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함
- 3)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4)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5)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바. 복수지원, 이중등록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1)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 2) 대학복수지원 금지 위반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입학을 취소함

사.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

- 1) 합격자는 온라인 문서등록 완료 후 반드시 최종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음
- 2) 온라인 문서등록 및 최종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수시 합격자는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아. 대입 지원 부정에 관한 사항

-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반환

- 2)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입학 취소 후 3년간 우리 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 3) 우리 대학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8. 문의 및 상담

가. 「입학정원 2%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문의 및 상담: 입학처 입학관리팀

- 1) 전화 (043)229-8033, 8034
- 2) FAX : (043)229-8037
- 3) 주소 : 우편번호 28503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팀

나.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문의 및 상담: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 1) 전화 (043)229-8814
- 2) FAX : (043)229-8944
- 3) 주소 : 우편번호 28503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다. 홈페이지

- 1) 청주대학교: <http://www.cju.ac.kr>
- 2) 청주대학교 입학처: <https://www.cju.ac.kr/ipsi/index.do>

## 9. 지원서 및 관련 서류 출력 안내

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대학입학 → 재외국민·외국인 모집 → 자료실 → 서식파일 (첨부서류)